

일본정부의 독도 고유영토론에 관한 역사학적 검증

박병섭 | 일본 竹島=독도연구넷

- I. 머리말
- II. 일본이 발명한 고유영토론
- III. 「일본정부견해」에 대한 검증
- IV. 맺음말

I. 머리말

일본 외무성은 팸플릿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개의 포인트』(『10포인트』로 약칭)를 12개국 언어로 작성하고,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¹라고 주장한다. 고유영토의 근거로써 『10포인트』는, “이 기간(17세기) 중에 오키[隱岐]에서 울릉도에 이르는 길에 위치한 다케시마[독도]는 항행의 목표지점으로서, 배의 중간 정박지로서 또한 강치나 전복 잡이의 장소로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하여 일본은 늦어도 에도[江戸]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²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 조선 땅인 가능성이 있다고 본 독도를 단지 자연스럽게 이용했던 것이 왜 일본은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없다. 이는 논리의 비약이며,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현상대로라면 외무성 견해는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다”³고 지적한다.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보면, 반세기 전에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보낸 「일본정부견해」 외에는 없다. 한·일 양국 정부는 1953년부터 1965년까지 4번에 걸쳐 독도 영유권에 관한 논쟁을 벌였는데 그때 일본정부는 고유영토의 근거라고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⁴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 다케시마[竹島]는 기본적으로 울

* 투고: 2018년 8월 13일, 1차 심사 완료: 2018년 11월 13일, 재심사 완료: 2018년 11월 21일, 게재 확정: 2018년 11월 26일

1 일본 외무성, 2014,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개의 포인트』, 2쪽.

2 일본 외무성, 2014, 위의 책, 8쪽.

3 池内敏, 2016, 『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中公新書, 62쪽.

4 「일본정부견해1」의 날짜는 1953.7.13, 「일본정부견해2」는 1954.2.10, 「일본정부견

릉도를 가리키며, 마쓰시마[松島]는 독도를 가리킨다.

- ① 1681년 요나고[米子] 조닌[町人] 오야[大谷]가 에도 막부(幕府)에 제출한 「청서(請書)」에 따르면, 오야 및 무라카와[村川] 양가는 1656년 이전에 아베 시로고로[阿倍四郎五郎]의 주선으로 막부에게서 마쓰시마(독도)를 배령해 강치잡이를 조금씩 하였다. 이는 막부의 ‘마쓰시마 도해면허’ 아래 행해졌으므로 일본은 마쓰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것이다.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실제로 마쓰시마를 경영한 것은 많은 자료에서 분명하다.
- ② 1695년 돗토리번[鳥取藩]이 막부로 제출한 「회답서」에 어민들이 다케시마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쓰시마에서 전복을 조금 채취했다고 기록되었다.
- ③ 1696년 돗토리 번주가 막부로 제출한 「각(覺)」에 어민들이 마쓰시마에서 어업을 하였다고 기록되었다.
- ④ 1720년대 돗토리번이 막부로 제출한 「다케시마도[竹島圖]」에 마쓰시마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으며, 일본은 마쓰시마를 잘 인지하고 있었다.
- ⑤ 1724년 돗토리번이 막부로 제출한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松島·竹島の圖]’는 일본인의 마쓰시마 경영과 그 인식의 정확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⑥ 1741년 오야가 나가사키봉행[長崎奉行]에게 제출한 「구상서」, 이를 「일본정부 견해2」는 영유권의 근거로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 ⑦ 1667년 사이토 아무개[齋藤某]가 편찬한 『인슈(온슈)⁵시청합기(隱州視聽合

해3」은 1956.9.20, 「일본정부견해4」는 1962.7.13이다. 서인원은 아래 논문에서 「일본정부견해3」의 날짜를 1954.9.25, 「일본정부견해4」의 날짜를 1959.1.7이라고 썼으나, 이들은 「한국정부견해2」 및 「한국정부견해3」의 날짜이며 잘못된 것 같다. 서인원, 2018, 「1950년대 일본 고유영토설의 정치적 분쟁화 모순점에 대한 고찰」, 『영토해양연구』 15호, 35쪽. 한편 「일본정부견해」 및 「한국정부견해」의 전문은 외무부, 1977, 『왕복외교문서(1952-1976)』 및 外務省, 『日韓外交正常化交渉の記録』, XV竹島問題(公開文書番号 910, 발간 연도는 불명)에서 공개되고 있다.

- 5 「隱州」의 읽기는 「因州」와 구별하기 위해서인지, 아래 문헌에 따르면 에도시대에는 ‘온슈’라고 읽었다. 油井宏子, 2009, 『江戸時代&古文書虎の巻』, 柏書房, 105쪽.

記)에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일본 서북의 한계라고 기록되어 있다.

⑧ 1751년 기타조노 쓰안[北園通菴]의 『다케시마도설[竹島圖說]』에 ‘오키국 마쓰시마’라고 기록되었다.

⑨ 1801년 야다 다카마사[矢田高當]의 『장생다케시마기[長生竹島記]』에 마쓰시마는 본조(本朝) 서해 끝이라고 기록되었다.

⑩ 1775년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일본여지로정전도(日本輿地路程全圖)』에 마쓰시마가 그려져 있다.

⑪ 1804년 곤도 모리시게[近藤守重]의 『변요분계도고(邊要分界圖考)』에 마쓰시마가 그려져 있다.

⑫ ‘덴포[天保]다케시마일건’ 때 하치에몬에 대한 판결문(1836)에 마쓰시마로 도항한다는 명목으로 다케시마로 도항하는 방법이 있다는 글이 있으므로 마쓰시마로의 도해는 문제가 없었다.

이상과 같이 일본정부는 고유영토의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들 중에서 ①, ③, ⑦~⑪은 당시 외무성 직원이었던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가 지은 『다케시마의 영유[竹島の領有]』(1953)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일본정부견해」의 역사 분야는 주로 가와카미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했던 것이다. 이런 「일본정부견해」가 제시한 자료들에 대해 「한국정부견해」는 단지 ⑦ 『인슈시청합기』의 오독을 지적했을 뿐이었다. 한편 연구자들의 선행연구 및 논쟁에 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개략은 다음과 같다.

①오야의 「청서」 자체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다. 단지 「청서」를 바탕으로 일본정부가 주장한 ‘마쓰시마 도해면허’설에 대해 호리 가즈오[堀和生]가 지지했지만,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이케우치 사토시 등이 부정적으로 보았다. ② 돗토리번의 「회답서」에 관해서는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 이케우치 사토시 등이 「일본정부견해」 및 가와카미의 주장을 비판했다. ③ 돗토리 번주의 「각」은 이 안에 “마쓰시마는 어느 지방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라는 글이 있는데, ‘어느 지방’은 ‘돗토리번의 어느 지방’인지, ‘일본의 어느 지방’인지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다. ④뫏토리번의 「다케시마도」는 박병섭이 분석했지만, 일본정부가 의도한 지도와 다를 수도 있다. ⑤「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에 관한 분석은 거의 없다. ⑥나가사키봉행에 제출한 오야의 「구상서」에 대해 이케우치 사토시가 약간 언급했다. ⑦『인슈시청합기』에 관해서는 시모조 마사오 [下條正男]가 「일본정부견해」를 지지했으나, 이를 이케우치 사토시가 철저히 반박했다. ⑧기타조노 쓰안의 『다케시마도설』에 대한 검토는 거의 없다. ⑨야다 다카마사의 『장생다케시마기』에 관해서는, 자료의 편찬 의도에 관한 권정의 연구나,⁶ 희문의 해석을 통해 편자의 의도를 살피는 권혁성의 연구가 있으나,⁷ 이들은 「일본정부견해」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⑩「일본여지로정전도」 및 ⑪곤도 모리시게의 「변요분계도고」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는 거의 없다. ⑫하치에몬의 판결문에 대한 분석은 없지만, 이에 관한 「일본정부견해」를 이케우치 사토시가 비판했다.

이처럼 일본정부가 제시한 자료에 대해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진 자료는 12개 중 ②「회답서」와 ⑦『인슈시청합기』 등 2개뿐이며,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일본정부견해」의 고유영토론에 대한 분석이나 비판이 미흡함은 자명하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일본정부의 고유영토론을 비판하는 글은 많이 있으나,⁸ 이들은 일본정부가 제시한 고유영토론의 자료에 대해서는 2~3개 자료에만 반론했을 뿐이다. 그런데 영유권 논쟁에 있어서는 우선 상대방의 주장을 직

6 권정, 2014, 「18세기말 오키도(隱岐島)의 죽도전승」, 『일본어문학』 65집, 241~260쪽.

7 권혁성, 2014, 『長生竹島記』의 戲文, 『일본어교육』 69집, 245~264쪽.

8 서인원, 2018, 앞의 글; 곽진오, 2014, 「일본의 독도고유영토, 무주지선점, 그리고 국제법적주장의 허구와 한계」, 『일본문화학보』 62호, 161~176쪽; 송휘영, 2014, 『죽도문제 100문 100답』의 「죽도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 비판; 일본의 「고유영토론」은 성립하는가?, 『독도연구』 16호, 209~240쪽; 김호동, 2011,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 비판」, 『민족문화논총』 49호, 329~356쪽. 필자가 본고를 두고 (2018.8.15)한 뒤, 아래 논문이 발표되었음을 밝혀둔다. 송휘영, 2018/9,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론」과 독도 인식」, 『한국동양정치사상연구』 제17권 2호, 167~198쪽.

접 반론하는 것이 필수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아직 해명되지 않는 일본정부의 자료나, 해명이 충분하지 않은 자료를 포함해 일본정부의 고유영토론을 역사학적 관점에서 검증한다.

본고의 인용문에서 ()안은 원문대로이며, []안은 필자의 주다. 독도의 일본 호칭인 ‘다케시마’는 인용문 안에서는 그대로 쓰고, 필자의 주로써 [독도]를 추가한다.

II. 일본이 발명한 고유영토론

고유영토론은 일본이 발명했다고 한다.⁹ 1945년 패전으로 많은 영토를 잃은 일본은 실지 회복을 위하여 고유영토라는 말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러·일 국경 지대에 있는 하보마이·시코탄 두 섬에 대해 사용했으나,¹⁰ 1956년에는 외상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가 처음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국회에서 발언했다. 그 이전에는 참의원(參議院)의원 단 이노[團伊能]가 외무위원회(1951.2.15)에서 발언했듯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인해 독도는 일본에서 분리된다는 견해가 유력했으며, 일본정부가 단 의원의 발언을 묵인하고 있었다. 또한 독도에 관심이 깊은 시마네현(島根縣)에서도 그런 풍설이 파다했다.¹¹ 일본에서

9 和田春樹, 2012, 『領土問題をどう解決するか』, 平凡社新書, 32쪽.

10 일본정부는 미국에 제출한 아래 ‘영토 조서’의 부속 지도에서 하보마이·시코탄은 홋카이도(北海道)의 일부라고 쓰고 치시마(쿠릴)열도에 있다고 하는 구나시리·에토로후와 구별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하보마이·시코탄을 고유영토로 간주한 것이다. Foreign office Japanese Government, 1946, *Minor Islands Adjacent to Japan Proper, Part I, The Kurile Islands, The Habomais And Shikotan*.

11 『毎日新聞』1951.12.14, 「宝庫竹島」; 박병섭, 2015a, 「대일강화조약과 독도·제주도·쿠릴·류큐제도」,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VII』, 선인, 460쪽; 朴炳涉, 2014,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千島・竹島=独島問題(3)」, 『北東アジア文化研究』39호, 66쪽.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인식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한편 일본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했던 것은 1962년 「일본정부견해 4」가 처음이다.

일본에서는 고유영토라는 단어를 ‘고래(古來)의 영토’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래’는 언제부터인지, 100년 전인지, 혹은 그보다 이전인지 그 시기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일본에서는 야마베 겐타로[山辺健太郎]에 따르면 메이지[明治]헌법을 작성할 때 ‘고래의 영토’가 검토되었다고 한다.¹² 그 헌법 기초자의 한 사람인 이토 미요지[伊東巳代治]는 『제국판도(帝國版圖)』에서 “우리 제국의 판도는 옛날에 오야시마[大八島]”¹³라고 하고 그 이후에 게이코[景行]천황이 동쪽 에미시[蝦夷]나 서쪽 구마소[熊襲]를 정복하고 점점 판도를 넓혀, 드디어 근대에는 홋카이도[北海道], 오키나와[沖繩]제도,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를 일본제국의 판도로 했다고 썼다. 이토가 생각한 ‘고래의 영토’는 오야시마이며,¹⁴ 근세·근대에 획득한 홋카이도나 오키나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야마베에 따르면 어느 일본 역사가는 이토가 말하는 오야시마야말로 일본 고유의 영토에 대한 명백한 정의라고 했다고 한다. 이 역사가에 따르면, 홋카이도나 오키나와 등은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를 일본정부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연구자들을 보면, 독도 문제 연구의 제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나 다무라 세이자부로[田村清三郎] 등은 고유영토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았다. 고유영토라는 말은 모호한 정치 용어이기 때문에 연구자는 그 사용을 주저할 것이

12 山辺健太郎, 1965, 「竹島問題の歴史的考察」, 『코리아評論』 7卷2号, 4쪽; 朴炳涉, 2014,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千島, 竹島=独島問題(2)」,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9号, 47쪽.

13 伊東巳代治, 『帝國版圖』, 国会圖書館所藏「伊東巳代治關係文書」42(쪽수는 없음, 명확한 발간 연도는 불명); 朴炳涉, 2014, 앞의 글, 47쪽.

14 오야시마(大八島, 大八洲)는 아와지시마(淡路島), 아키쓰시마(秋津島, 本州), 이요노 후타나시마(伊予の二名島, 四國), 쓰쿠시지마(筑紫島, 九州), 이키시마(壱岐島), 쓰시마(津島, 對馬), 오키노시마(隱岐島), 사도가시마(佐渡島)다.

다. 또한 외무성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연구자가 많다.

예를 들면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일본 외무성이 17세기를 기점으로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위화감(違和感)을 느낀다고 한다.¹⁵ 시모조는 일본은 1905년에 ‘무주지’인 독도를 편입한 것이며, 17세기 당시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시모조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유영토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외국에 의해 지배당한 일이 없는 영토를 말한다. . . [도중 생략] 무주지를 편입한 일본은 다케시마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¹⁶는 것이다.

그러나 시모조의 정의대로라면 외국의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고유영토가 없었던 것이 된다. 또한 유럽에서는 19~20세기에 국가가 취득한 영토를 고유영토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¹⁷ 시모조의 정의는 세계사적인 시야가 모자란 견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쓰카모토 다카시는 외무성의 고유영토론을 지지하는 한편 ‘무주지선점’ 설도 인정하고, “일본은 [1905년] 영토 편입 때 선점(先占)의 논리를 내세웠지만 그것과 고유영토의 주장은 모순되지 않는다”¹⁸라고 주장한다. 쓰카모토가 말하는 선점의 논리는 “국제법상 영토 취득 방법의 하나인 무주지 ‘선점’의 논리”¹⁹라는 것이다. 요컨대 쓰카모토는 일본이 고유영토인 독도를 무주지로서 선점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시모조처럼 위화감을 느끼는 자가 많을 것이다. ‘무주지’를 사전에서 보면 “소유자가 정해지지 않은 토지, 혹은 어느 나라

15 山陰中央新報社, 2006, 『発信 竹島~下條正男・拓殖大学教授に聞く』, 山陰中央新報社, 24쪽.

16 下條正男, 2011, 『実事求是 第20回「東北アジア歴史財団」の愚挙について』,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2009年度, 34쪽.

17 羽場久美子, 2013, 「尖閣・竹島をめぐる「固有の領土」論の危うさ」, 『世界』, 43쪽.

18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2014, 『竹島問題100問100答』, ワック, 29쪽.

19 塚本孝, 2014, 「竹島領土編入(1905年)の意義について」, 『島嶼研究ジャーナル』3卷2号, 50쪽.

에도 영유되지 않은 토지”(『デジタル大辞泉』)라고 한다. 따라서 ‘무주지’라는 말은 ‘고유영토’와 상충되며, 쓰카모토의 주장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 외무성은 고유영토의 정의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러·일 국경 지대에 있는 남부 치시마(쿠릴)열도에 대해, “북방4도는 우리 국민의 선조 전래(父祖傳來)의 땅으로서 이어받은 것이며 여태까지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입니다”²⁰라고 쓰고 있다. 외무성이 북방4도에 관해 ‘고래의 영토’라든지 ‘본래의 영토’라고 쓰지 않고 “선조 전래의 땅”이라고 쓴 것은 이케우치가 말하듯이 “북방4도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본래 일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²¹는 사정을 고려한 듯하다.

한편 외무성은 ‘무주지’를 선점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센카쿠(다오위다오)제도도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므로²² “선조 전래의 땅”인지 여부는 고유영토의 정의와는 관계없다. 이런 경우 고유영토의 의미는 ‘고래의 영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정치학자 기무라 간(木村幹)에 따르면 이런 고유영토의 의미는 예로부터 자국 영토라는 소박하고도 낡은 고유영토론이 아니라, “특정 영토가 그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발하기 전에 자국 외에는 지배되지 않았던 영토”²³라고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센카쿠(다오위다오)제도에는 맞지 않는다. 센카쿠 제도 및 오키나와는 1945~1952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에 의해 통치되었고, 1952~1972년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미국에 의해 통치되었으며, 일본인도 일본국이 발행하는 여권 없이는 ‘입국’ 할 수 없는 외국이

20 外務省, 2015年版, 『われらの北方領土』, 4쪽.

21 池内敏, 2016, 앞의 책, iii쪽.

22 外務省, 『尖閣諸島』 2014는 이 섬의 편입에 대해, “어느 나라도 지배가 미치지 않았음을 신중히 확인했습니다. 그런 뒤 일본정부는 1895년 1월 14일에 현지에 표목을 세운다는 각의 결정을 하고 정식으로 일본의 영토에 편입했습니다. 이 행위는 국제법상 정당한 영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에 합당합니다”(6쪽)라고 주장한다.

23 木村幹, 2014, 「池内敏著『竹島問題とは何か』, 『東洋史研究』, 72권 4호, 111쪽.

었다. 또한 화폐도 미국 달러가 사용되었으며, 확실히 미국의 영토였다.²⁴ 이처럼 외국의 영토로 된 적이 있었던 오키나와 및 센카쿠제도도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므로 기무라의 해석은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외무성이 말하는 고유영토는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이다.

일찍이 일본정부는, “고유본토(固有本土)의 해석에 관해서는 최소한 오키나와, 오가사와라, 가라후토[樺太]를 버리고 치시마는 남반부를 보유할 정도”²⁵라고 1945년 7월에 결정한 일이 있었다. 고유본토는 고유영토와 같은 뜻이다. 이에 관해 와다 하루키[和田春樹]는 오키나와 등을 고유본토에서 뺀 것은 이미 미국에 점령당하고 있어 일본 영토로 돌아올 가망이 거의 없기 때문이며, 오키나와에 사는 일본제국 신민의 일은 포기하더라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 이유 외에도 오키나와 등은 메이지시대에 일본 영토로 확정되었으므로 고유영토의 의식이 희박했던 사실도 있을 것이다.

다음에 독도의 경우인데, 앞의 시게미쓰 발언을 받들어 「일본정부견해4」는 처음으로 고유영토라는 용어를 썼으며, 또한 고유영토의 필요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국제법상 어느 지역이 오래전부터 일국의 고유영토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그 나라가 문제 지역에 관해 이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지배, 경영해 왔는지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²⁶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은 ‘울릉도 쟁계’(겐로쿠[元祿]다케시마일건)의 예로 쉽게 알 수 있다. 울릉도는 조선 정부가 300년간 버려두었다고 인식하고 있던 섬이다. 여기에 1625년경에도 막부[江戸幕府]의 도해면허를 받은 요나고 상인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도항하여 강치잡이나 전복 채취 등 「일본정부견해」가 말하는 ‘실효적인 지배나 경

24 법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오키나와 등은 신탁통치가 정식으로 결정될 때까지 “미 합중국은 영수(領水)를 포함한 이들 제도의 영역 및 주민에 대해 행정, 입법 및 사법상의 권력의 전부 및 일부를 행사하는 권리를 가진다”(제3조)고 규정되었다.

25 和田春樹, 2012, 前掲書, 25쪽에서 재인용.

26 外務省, 앞의 책,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 XV - 162쪽.

영'을 70년에 걸쳐 행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일본정부의 주장과 달리 일본의 고유영토로 되지 않았고 조선 영토가 되었다. 즉 실질적인 지배·경영이라는 근대 국제법에서 중요한 영토의 취득 요건은 17세기 조·일 관계에서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다. 대체로 19세기 중반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일본이나 조선 등에서 권익을 탈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근대국제법을 17세기로 거슬러 조·일 간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이다.

Ⅲ. 「일본정부견해」에 대한 검증

일찍이 「일본정부견해3」 및 「4」가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의 근거로 제시한 12개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1. 오야의 「청서」와 「마쓰시마 도해면허」설

일찍이 「일본정부견해3」이 인용한 오야의 「청서」는 1681년에 호키국[伯耆國]을 순찰한 막부의 순견사(巡見使)가 오야에게 다케시마(울릉도)의 상황을 질문했을 때 오야가 제출한 회답서다. 이 「청서」는, “겐유인[嚴有院, 德川家綱]님 시기 [1651~ 1679] 다케시마로 가는 길에 주위 20정[2.2km] 정도의 소도가 있습니다. 이는 초목도 없는 바위섬입니다. 25년 이전에 아베 시로고로 님의 주선으로 막부로부터 배령해 배로 건너갔습니다. 이 소도에서도 강치 기름을 조금씩 채취했습니다”²⁷라고 기록했다. 위의 ‘소도’는 마쓰시마(독도)라고 생각된다. 또한 아베 시로고로는 다케시마 도해면허의 발급 등을 주선한 막부 가신(幕臣)이다. 이 「청서」는 오야가 다케시마처럼 소도를 배령했다고 썼으나, 오야 같은 조년이 막부로부터 섬 등을 배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는 분명히 오야의 윤

27 『竹嶋渡海由来記抜書控』(돗토리현립박물관 소장), 三代目九右衛門勝信條.

색이다.

그런데 「일본정부건해3」은 ‘배령’이라는 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1656년 혹은 그 이전에 오야가 마쓰시마도 막부로부터 배령하고 어령을 포함해 이를 독점적으로 경영하는 면허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배령’이라는 글에서 곧바로 ‘마쓰시마 도해면허’설을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논리의 비약이다. 이 결함을 메우기 위해 가와카미 겐조는 ‘마쓰시마 도해면허’설을 발전시켰다. 가와카미는 마쓰시마 도해에 관해 아베가 막부의 최고 집권자인 로주[老中]의 내의(內意)를 얻었다고 쓴 가메야마 쇼자에몬[龜山庄左衛門]의 서장(1660.9.5) 등을 ‘오야가 문서[大谷家文書]’에서 발굴해 이 설을 보강했다. 가메야마는 아베의 가신이다. 가메야마의 서장은, “내년부터 다케시마 안의 마쓰시마로 당신 배가 건너가게 될 일에 관해 선년 시로고로가 로주님의 내의를 얻었습니다”²⁸라고 쓰고 있다. 가와카미는 ‘로주의 내의’라는 글에서 ‘마쓰시마 도해면허’가 내려졌다고 해석한 것이다.²⁹

가와카미의 ‘마쓰시마 도해면허’설에 대해 호리 가즈오가 찬동했으나,³⁰ 쓰카모토 다카시는 다케시마의 경우와 같은 도해면허는 발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보았다.³¹ 또한 이케우치 사토시도 ‘마쓰시마 도해면허’설을 부정하고 ‘로주의 내의’는 마쓰시마 도해를 무라카와 단독에서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공동사업으로 조정하는 작업과 관련된 의향이라고 보았다.³² 무라카와 단

28 원문은, “來年より竹嶋之内松嶋へ貴様舟御渡之筈ニ御座候旨 先年四郎五郎御老中様へ得御内意申候”이다. 로주는 에도 막부의 최고 집권자다. 가메야마 서장은 東京大学史料編纂所가 소장하는 『大谷氏舊記』三에 사본이 게재되어 있다.

29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73쪽.

30 堀和生, 1987, 「一九〇五年 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24号, 101쪽.

31 塚本孝, 1994, 「竹島領有権問題の経緯」, 『調査と情報』244号, 1쪽. 또한 第2版(1996), 第3版(2011)도 같음.

32 池内敏, 2016, 앞의 책, 60~61쪽.

독의 마쓰시마 도해가 기정사실이 되었으므로 마쓰시마 도해의 신규 허가 등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케우치가 말하는 조정 작업에 관해 박병섭은 이는 어렵 조건이 나쁜 마쓰시마로의 도해를 싫어하는 오야를 아베가 설득한 작업으로 보고, ‘로주의 내의’는 도해면허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³³ 이처럼 ‘마쓰시마 도해면허’ 설은 거의 부정되었고, 현재 이 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쓰카모토 다카시는 최근에 ‘도해면허’ 대신 ‘도해허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가와카미의 앞의 설을 수정하고, “시로고로가 로주의 내의를 얻었다고 하므로, 기록상 1661년 이후는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에도 막부의 공인 아래 도항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⁴라고 주장한다. 이 설에 대해 이케우치는, “이름도 분명하지 않은 모 로주의 ‘내의’를 가지고 ‘막부의 공인’, ‘막부의 허가’라고 하는 것은 폭론이다. 더구나 이 사료가 말한 ‘내의’ 그 자체가 혹시 아베 시로고로 마사유키[正之]의 재량으로 그렇게 말했을 뿐인, 가공의 작위 가능성조차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가와카미 자신이 말하고 있다. 이런 공소(空疎)한 자료 해석으로 외무성 견해의 구멍 메우기(穴埋め)를 하는 것은 무리한 일”³⁵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쓰카모토나 가와카미는 가메야마 서장에서 ‘로주의 내의’에 주목한 나머지 그 직전에 있는 글을 간과 혹은 경시했다. 가메야마 서장은 ‘다케시마 안의 마쓰시마’로 내년부터 오야가 도해할 것에 대해 아베가 로주의 내의를 얻었다고 쓴 것이다. 즉 로주는 마쓰시마가 다케시마 안에 있는 섬, 즉 마쓰시마가 다케시마에 부속된 섬임을 양해했던 것이다. 본래 마쓰시마는 오야의 「청서」가 말하는 ‘다케시마로 가는 도중에 있는’ 섬이다. 게다가 ‘로주의 내의’ 이전에 무라카와는 마쓰시마 도해 허가 등과 상관없이 이미 마쓰시마로 도해했는데, 이를

33 박병섭, 2013, 「17세기 일본인의 독도 어업과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 15호, 160~162쪽; 朴炳涉, 2012b, 「江戸時代の竹島=独島での漁業と領有権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5号, 20~25쪽.

34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2014, 앞의 책, 142 및 184쪽.

35 池内敏, 2016, 앞의 책, 63쪽.

아베 등 막부의 다케시마 관계자가 문책하지 않았다. 원래부터 마쓰시마로의 도해는 문제가 없었으며, 허가 등은 필요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일본정부가 고유영토론의 근본으로 삼은 ‘마쓰시마 도해면허’ 설은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쓰카모토가 주장한 ‘마쓰시마 도해 허가’ 설도 성립되지 않는다.

2. 돗토리번의 「회답서」와 번주의 「각」

조선 정부는 ‘울릉도 쟁계’ 와중에 쓰시마번[對馬藩]과의 교섭 방침을 전환했다. 그 전에는 다케시마와 울릉도는 다른 섬인 것처럼 다루었지만, 1694년 8월 갑자기 정부는 일본이 말하는 다케시마는 조선의 울릉도라는 ‘1도 2명’ 설을 주장하고, 그 섬에 일본인들이 침입했다고 비난했다. 이로 인해 양국의 교섭은 암초에 부딪혔다.

1695년 쓰시마번에게서 이런 설명을 들은 로주 아베 분고노카미[阿部豊後守]는 조선이 말하는 ‘1도 2명’ 설을 확인하기 위해 다케시마를 영유하고 있다고 생각한 돗토리번에 다케시마 및 주변 섬들의 소속이나 실정을 7개조로 질문했다. 이에 대한 12월 25일자 「회답서」를 「일본정부견해3」이 인용한 것이다. 이 「회답서」에 “올해 이국인[조선인]이 [다케시마에] 많이 있었으므로 착안하지 않고 돌아오는 길에 마쓰시마에서 전복을 조금 채취했습니다”³⁶라고 기록되었듯이, 일본인들은 마쓰시마를 기항지로 이용함과 동시에 어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은 이 「회답서」는 나이토 세이추가 지적했듯이,³⁷ 마쓰시마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드러내는 자료다. 즉 이 「회답서」 7개조는 제1조에서 “다케시마는 이나바[因幡]·호키 부속이 아닙니다”라고 쓰고, 제4조에서 위의 일본정부의

36 『竹嶋之書附』(鳥取県立博物館所藏). 「회답서」 제목은 「亥十二月四日 竹嶋之御尋書之御返答書 同廿五日平馬持參 曾我六兵衛二渡ス」.

37 内藤正中, 2004, 「竹島(独島)問題の問題点」, 『北東アジア文化研究』 20号, 9쪽.

설명대로 쓰고, 제7조에서 “다케시마·마쓰시마 기타 양국[이나바국·호키국]에 부속된 섬은 없습니다”³⁸ 라고 썼다. 즉 이나바국과 호키국을 다스리는 듯토리번은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자기 번의 소속이 아님을 보고한 것이다.

이 「회답서」에 등장한 마쓰시마 등에 관해 로주는 듯토리번에 두 번째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회답이 「일본정부견해3」이 인용한 번주의 「각」(1696.1.23)이며, 번주는 10개조로 회답했다. 이 중에서 제3조를 인용한 「일본정부견해3」은 「각」이, “마쓰시마에 어렵하러 간 것은 다케시마로 도해할 때 길목에 있으므로 들러서 어렵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어렵하러 갔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즈모국[出雲国], 오키국 사람들은 요나고 사람들과 함께 같은 배로 갔습니다”³⁹라고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유권 문제에 중요한 조항은 제2조다. 이에 듯토리 번주는, “마쓰시마는 어느 나라[지방]에도 부속된 섬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⁴⁰라고 기록했다. 이 ‘어느 나라’에 대해 가와카미 겐조는 ‘이나바국과 호키국’을 가리킨다고 좁게 해석했다.⁴¹ 이케우치 사토시도 마찬가지로 말한다.⁴² 한편 쓰카모토 다카시는 ‘어느 나라’는 이나바·호키 양국이거나, 혹은 앞의 「회답서」에서 마쓰시마에 관한 단정적인 대답 형식과의 차이로 보아 일본의 다른 나라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38 원문은, 一 竹嶋は因幡 伯耆附属にては無御座候・・・[途中省略] 一 竹嶋 松嶋 其外兩國江附属之嶋無御座候事 以上. 한편 「일본정부견해4」는 12월 26일에 제출했다고 썼으나, 『竹嶋之書附』에는 「亥十二月廿四日 竹嶋之御尋書之御返答書 同廿五日ニ平馬持參曾我六兵衛ニ渡ス」라고 쓰고 있으므로 26일은 25일일의 잘못된 것 같다.

39 『磯竹島覺書』(国立公文書館所藏) 목차의 표제는 「同月[一六九六年一月]廿三日 松平伯耆守留守居召寄 并相尋候趣伯耆守より書付を以申來事」.

40 『磯竹島覺書』의 원문은, 松嶋ハ何れ之國江附候嶋ても無御座候由承候事. 에도 시대 나라는 국가를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자료에서는 일본의 지방 구역을 말한다. 이즈음 일본은 약 7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41 川上健三, 1966, 앞의 책, 85쪽.

42 池内敏, 2017, 『日本人の朝鮮觀はいかにして形成されたか』, 講談社, 87쪽.

다는 뜻을 말한 것으로도 해석된다고 주장하고 확정적인 결론을 내지 않았다.⁴³ 다케우치 다케시[竹内猛]는 돗토리 번주가 마쓰시마에 관해 자기 영지에 대해 ‘들었습니다’라고 전문 형식으로 대답할 리가 없으므로, 번주는 “일본 국내의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⁴⁴라고 대답했다고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맥상으로도 제1조에 이즈모국이나 오키국 등이 등장하므로 마쓰시마는 이런 나라를 포함해 ‘일본의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일본정부는 번주의 「각」에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고 「각」의 일부를 자의적으로 잘라내 자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마쓰시마는 돗토리번의 이나바국·호키국은커녕 일본의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돗토리 번주가 회답한 것이며, 이 자료는 마쓰시마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3. 돗토리번의 「다케시마도」와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

일본정부는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다케시마(울릉도)로 도항할 때 반드시 마쓰시마(독도)를 중간 기항지로 이용하고, 이 섬에서도 어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드러내는 자료의 하나로 「일본정부견해2」는 돗토리 번주인 이케다[池田]가 문이 작성한 「다케시마도[竹島圖]」(1720년대)를 인용해, “「다케시마도」는 막부의 명령에 따라 조정(調整)해서 제출된 것의 복사이며 공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그 내용도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에 관해 아주 정확한 지리적 지식이 있었

43 塚本孝, 1985, 「竹島關係旧鳥取藩文書および絵圖(上)」, 『レファレンス』 411号, 87쪽. 다만 최근 쓰카모토는 다음 논문에서 ‘어느 나라[지방]’을 아나바·호키 어느 나라라고 해석했는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塚本孝, 2013, 「元禄竹島一件をめぐって—付、明治十年太政官指令」, 『島嶼研究ジャーナル』 2卷2号, 43쪽.

44 竹内猛, 2010, 『竹島=独島問題「固有の領土」論の歴史的検討』 前編, 私家版, 45쪽; 다케우치 다케시, 송휘영·김수희 역, 2013, 『獨島=竹島 문제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 I, 선인, 96~97쪽.

음을 전하고 있다”⁴⁵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도는 첨부하지 않았다.

일본정부가 말하는 1720년대 지도를 찾으면 「다케시마 지도[竹島之圖]」⁴⁶〈그림 1〉 및 『다케시마 문서[竹嶋之書附]』에 부속된 「다케시마도[竹嶋圖]」〈그림 2〉가 있다. 이들 지도에는 모두 “교호 9 진(享保九辰)[1724]년 4월 에도를 위해 그렸던 사본”이라고 기입되어 있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는 일본 어민들이 마쓰시마에서 어업을 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또한 「다케시마도」〈그림 2〉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한 덩어리로 그리고, 게다가 다케시마 아래쪽에 ‘조선국’이라고 썼으므로 이 지도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그린 것처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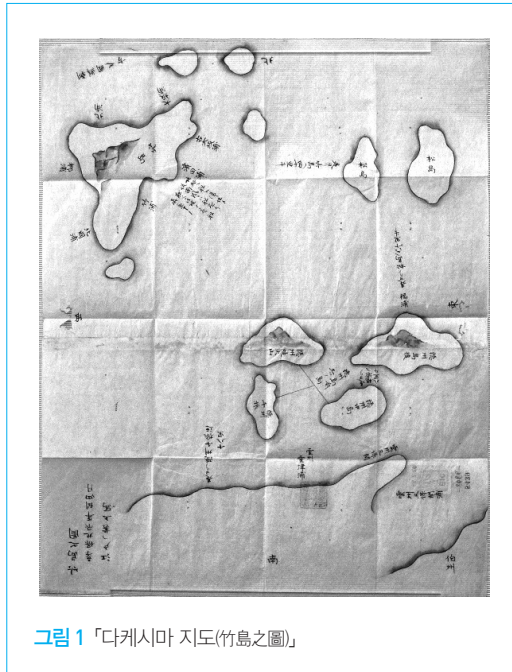


그림 1 「다케시마 지도(竹島之圖)」

45 外務省, 앞의 책, XV-86쪽.

46 돗토리현립박물관 소장 번호 #8439.

인다.⁴⁷ 과연 이런 지도를 일본정부가 영유권 주장에 인용했는지 의문이다. 외무성이 의도한 지도와는 다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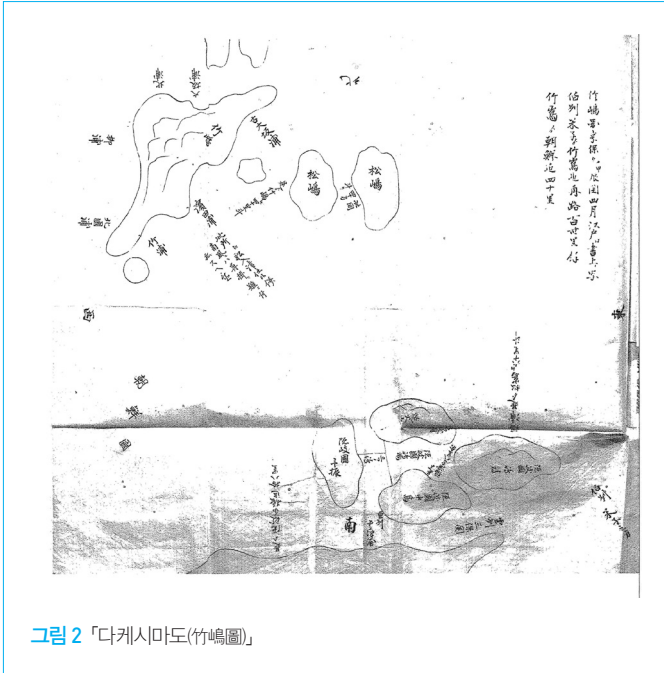


그림 2 「다케시마도(竹嶋圖)」

그 후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도」에 대해 아무 말이 없는 채, 새로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松島·竹島の圖]'라고 칭하는 자료를 인용했다. 「일본정부견해 4」는, “호키의 이케다번[돗토리 번]이 교호 9년(1724년)에 막부의 명령에 따라 조진(調進)한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에는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독도])를 좁은 수도(水道)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마주선 2도와 이를 둘러싼 몇 개의 암초

47 박병섭, 2012a, 「안용복사건 이후의 독도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 13호, 138~141쪽.

를 그리고, 또한 동도의 수도쪽 해안가에 ‘배를 대는 곳(船寄場)’이라고 적고, 소
 옥도 그리고 있어서 일본인의 다케시마[독도] 경역과 그 인식의 정확성을 드러
 내고 있다”⁴⁸라고 주장했다. 이 설명은 위의 「다케시마도」에 대한 설명과 통하므
 로 일본정부는 위의 「다케시마도」의 이름을 바꾸어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
 라고 칭한 것 같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말하는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를 찾아보았지만, 어
 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당연할 듯하다. 당시 외무성의 담당자인 모리타 요
 시오[森田芳雄]가 『외무성월보(外務省月報)』에 쓴 논문 ‘마쓰시마·다케시마
 의 지도’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 외무성이 말하는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
 는 표제가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모리타가 논문에서, “1724년에 막부의
 명령으로 호키번(伯耆藩)이 조진한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⁴⁹라고 설명한
 지도를 보면, 이는 틀림없이 「고타니 이해[小谷伊兵衛]가 제출한 다케시마 회도
 (繪圖)」⁵⁰(「고타니 회도」로 약칭)〈그림 3〉이다. 이 표제는 회도 안에는 없으며 회
 도를 보관한 봉투에 쓰여 있다. 이 회도에 관한 해제는 전 돗토리현립박물관장
 미타 기요토[三田清人]의 글이 있다.⁵¹ 이 「고타니 회도」에는 소옥을 그린 그림
 이 보이며, 또한 마쓰시마에는 ‘船すへ場[배를 정박시키는 곳]’이라는 글도 보인
 다. 이 글을 모리타 및 「일본정부견해4」는 ‘船寄場[배를 대는 곳]’이라고 의역했
 던 듯하다. 또한 모리타는 논문에 ‘호키번’이라고 썼는데, 이 단어는 사전에 없
 으며 ‘돗토리번[鳥取藩]’이라고 쓰는 것이 옳다.

48 外務省, 앞의 책, XV-165쪽.

49 森田芳夫, 1961/5, 「竹島領有をめぐる日韓両国の歴史上の見解」, 『外務省調査
 月報』第2卷5号, 7쪽. 이 논문 끝에 “필자는 아시아국 북동아시아과 근무”라고 쓰
 고 있다.

50 돗토리현립박물관 소장 번호 #8443.

51 三田清人, 2007, 「鳥取県立博物館所蔵 竹島(鬱陵島)・松島(竹島/独島)関係資
 料」,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 島根県, 43쪽.



그림 3 「고타니 회도」(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繪圖, #8443)

또한「일본정부견해4」는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 즉「고타니 회도」의 작성 연대를 1724년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틀린 것으로 보인다. 이 지도의 작성 연도를 시마네현 교육위원회 등이 간행한 전단[leaflet] 『다케시마』는 1696년으로 보았다.⁵² 또한 미타 기요토도「고타니 회도」는 1696년에「고타니 이해가 제출한 다케시마 문서」(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書附, 「고타니 문서」로 약칭)와 함께 막부에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⁵³ 이「고타니 문서」는 앞의 『다케시마 문서』에 수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앞에 쓴 돗토리 번주의 「각」과 거의 같다. 다만 번주의 「각」 제1조의 다케시마 도해의 경위에 관한 설명만을 빼고, 나머지 제

52 鳥根県/鳥根県教育委員会/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鳥根県民会議, 2017, 『竹島~日本の領土であることを学ぶ~』, 鳥根県, 1쪽.

53 三田清人, 2007, 앞의 글, 43쪽.

2-10조를 본문과 별지에 나누어 쓰고 있다. 제2조의 “마쓰시마는 어느 나라[지방]에도 부속된 섬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라는 기술은 별지에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고타니는 마쓰시마가 일본의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고타니 회도」를 작성했음이 분명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고타니 회도」를 가지고 마쓰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결코 주장할 수 없다.

4. 나가사키봉행에게 제출한 오야의 「구상서」

일본정부는 일본 어민들이 마쓰시마(독도)에서 어업을 했음을 밝히는 자료의 하나로 오야가 나가사키봉행에게 제출한 「구상서」를 「일본정부견해2」에서 인용했다. 이 「구상서」에 관한 설명은 없지만, 관련 자료는 오야가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이것도 분석한다.

이 「구상서」는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후 1741(寛保1)년에 오야가 막부 직할지인 나가사키 지방을 다스리는 나가사키봉행에게 ‘관물할부연중(貫物割符連中)’에 참여할 것을 청원했을 때 제출되었다. ‘관물할부연중’이란 청국에 수출하는 건물(마른 전복, 해삼, 상어 지느러미 등 소위 다와라모노(俵物))의 집하 등을 독점적으로 허가받은 상인 조직을 가리킨다.⁵⁴ 이에 참여할 것을 청원한 오야의 「구상서」는 마쓰시마에 관해 “다이유인[大猷院, 德川家光]님 시절[1623~1650] 다케시마로 가는 해로에서 또한 마쓰시마라는 섬을 발견하고 신고했더니 다케시마와 마찬가지로 지배를 맡겨 주셨습니다. 이 두 섬에 도해해 왔으므로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⁵⁵라고 적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앞에 쓴 오야의 「청서」에도 있으나 거기에는 시기가 도쿠가와 이에쓰나[德川家綱] 시절[1651~1680]로 되어 있다. 실제로 오야가 마쓰시마에서 강치잡이를 시작한 시기는 1661년이므

54 大西俊輝, 2011, 『第三部 日本海と竹島』, 東洋出版, 136쪽.

55 「乍恐口上書ヲ以奉申上候」, 『竹島渡来由来記抜書控』.

로 「구상서」에 쓴 다이유인 시절이라는 것은 오류인 듯하다. 또한 오야가 마쓰시마의 지배를 맡았던 일도 물론 없었다.

이 「구상서」를 일본정부는 일본의 마쓰시마 영유를 드러내는 자료로 인용했는데, 실은 오야는 당시에 마쓰시마로의 도해도 금지되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케우치 사토시가 발굴한 자료 『무라카와가 문서[村川家文書]』 사본에 따르면, 1741년 6월 10일 오야는 에도에 있는 나가사키봉행 하기와라 호키노카미[萩原伯耆守]에게 앞의 「구상서」를 제출했을 때에 말하기를, “겐로쿠 기에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兩島)의 도해금제의 명을 받은 이후”⁵⁶라고 말한 뒤, 그 후의 오야의 상황을 설명했다. 오야는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다케시마 및 마쓰시마 양도로의 도해금지로 인식했던 것이다. 또한 오야는 이 전년에 나가사키봉행으로 갈 것을 지시받은 지사봉행[寺社奉行]들과 이미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의 도해금지”⁵⁷를 확인하고 있었다.

에도 막부의 3대 봉행으로 손꼽히는 지사봉행은 사찰을 단속하는 일뿐만 아니라 막부의 최고 사법기관인 평정소(評定所)를 주도하는 요직으로서 자주 막부의 정책 자문에도 관여했던 권력자다. 앞의 『무라카와가 문서』에 따르면, 오야는 이 지사봉행이나 나가사키봉행과의 면담 내용을 그때마다 돗토리번의 에도 번저(藩邸)에 보고했다. 따라서 돗토리번도 같은 인식을 가졌을 것이다. 이처럼 오야뿐만 아니라 나가사키봉행이나 지사봉행, 돗토리번도 겐로쿠 기에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에 대한 도해금제가 내려졌다고 이해한 것이다.

일찍이 1650년대 가메야마 서장에서 볼 수 있듯이 에도 막부 관계자도, 오야도 마쓰시마를 다케시마 안에 있는 섬으로 인식했는데, 그 후도 마쓰시마가 다케시마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1740년대 에도 반세기 전의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은 마쓰시마 도해금지이기도 한 것으로

56 「大谷九右衛門、江戸表ニ於テ願一件」, 『村川家文書』(写), 54~55丁(米子市立圖書館所藏); 池内敏, 2015, 「『国境』未滿」, 『日本史研究』630号, 18쪽.

57 池内敏, 2015, 위의 글, 16~18쪽.

오야나 막부 관계자가 인식했던 것이다.

5. 『인슈시청합기』의 해석

17세기 중엽 오키국은 막부의 직할지가 되어 마쓰에[松江]번에 예탁되었다. 마쓰에번은 군대(郡代)를 두어 오키국을 통치하게 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사이토 도요노부[齋藤豊宣]⁵⁸는 1667년에 『인슈시청합기』를 편찬했다. 이 자료를 「일본 정부견해3」이 인용해, 『인슈시청합기』도 마쓰시마(독도) 및 다케시마(울릉도)를 일본 서북부의 한계로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본정부는 이 책의 「국대기(國代記)」에 기술된, “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운슈[雲州]에서 인슈[隱州]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즉 일본의 서북은 차주(此州)를 한계로 삼는다”⁵⁹는 글 중 ‘차주’를 ‘이 섬’이라고 해석하고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일본의 한계로 보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견해3」은 “일본 측은 오독하여 전(前) 2도[竹島·松島]로서 ‘일본의 서북부의 한계’라고 한 것은 큰 잘못이다”⁶⁰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이에 반박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의 비판을 묵인했음을 의미한다. 그 후도 일본정부는 ‘일본 서북부의 한계’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일본정부견해3」은 다가와 고조[田川孝三]의 주장을 인용한 것인데,⁶¹ 이에 대해 가와카미 겐조나 다무라 세이자부로는 아무 말이 없다. 그들은 다가와 고조의 견해에 의문을 가진 듯하다. 오니시 도시테루[大西俊輝]는 ‘차주’를 ‘인

58 저자를 齋藤豊宣의 아들 도요히사(豊仙)라고 하는 논문도 있지만, 아래 문헌에 따르면 저자는 도요노부(豊宣), 별명 勘介가 맞다. 大西俊輝, 2007, 『続 日本海と竹島』, 東洋出版, 15쪽.

59 원문은 “見高麗如自雲州望隱州 然則日本之乾地以此州為限矣.”이다.

60 외무부, 1977, 앞의 책, 192쪽.

61 田川孝三, 1988(原稿는 1965年 以前), 「竹島領有に關する歴史的考察」, 『東洋文庫書報20』, 41쪽.

슈' 즉 오키국이라고 보았다.⁶² 이 '차주'를 철저히 검증한 연구자는 이케우치 사토시다. 그는 『인슈시청합기』에서의 '차주'의 용어법을 모두 분석하여 '차주'는 '차국(此國)' 즉 오키국이라고 결론지었다.⁶³ 이 연구의 영향을 받아 예전에 '차주'를 다케시마·마쓰시마라고 해석한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는 견해를 바꾸어 '차주'를 '인슈'로 해석하게 되었다.⁶⁴

한편, 시모조 마사오는 다가와 고조의 견해를 이어받아, 이케우치가 '차주'를 오키 국이라고 해석한 것은 "이케우치 씨의 초보적인 실수"⁶⁵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이케우치는 "문맥, 용어법, 『인슈시청합기』 권2에는 '인슈는 서북의 극지(極地)다'라고 명기되어 있는 사실, 같은 시대 사람들의 읽기는 모두 '차주'를 '오키국'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등에서 '차주'는 '오키국'으로 읽을 수밖에 없으며 이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⁶⁶라고 반론했다. "같은 시대 사람들의 읽기"라는 것은 오니시 노리야스[大西教保]의 『오키국고기(隱岐國古記)』 등을 가리킨다.⁶⁷ 이케우치에 대한 유력한 반론은 없으며, 따라서 일본의 서북 한계는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아니라 오키국이라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시모조는 이케우치의 『인슈시청합기』에 관한 연구에 대해, "다케시마연구회가 조사,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⁶⁸라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남의 연구를 장애라고 말하거나, 혹은 "나이토 세이추 씨의 다케시마[독도]

62 大西俊輝, 2007, 앞의 책, 34쪽.

63 池内敏, 2005, 『『隱州視聽合紀』の解釈をめぐって』, 『青丘學術論集』 25集, 145~184쪽.

64 内藤正中·金柄烈, 2007, 『史的檢証 竹島·獨島』, 岩波書店, 22쪽.

65 下條正男, 2007, 「最終報告にあたって」,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竹島問題研究会, 5쪽.

66 池内敏, 2011, 「竹島／獨島論争とは何か」, 『歴史評論』 732号, 25쪽.

67 『隱岐國古記』는 "인슈의 소재는 역대 사료를 고려하면 일본의 서북 땅은 차국(此國)을 가지고 한계로 한다"(隱州の所在は歷代史を考ふるに日本の乾地 此國を以て限りとする也)라고 기술했다.

68 下條正男, 2007, 앞의 글, 4쪽.

연구는 다케시마 문제의 본질을 계속 왜곡해 왔다. 곡학아세(曲學阿世), 나이토 씨의 다케시마 연구의 문제점은 거기에 있다”⁶⁹라고 나이토를 비난했다. 시모 조다운 방식이다.

6. 『다케시마도설』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의 하나로 기타조노 쓰안의 『다케시마도설』을 「일본정부견해3」 및 「일본정부견해4」에서 인용했다. 후자는 “[이 문헌이] ‘오키국 마쓰시마’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마쓰시마의 서도’라고 쓰고 있다는 점 등에서 마쓰시마(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가 동·서 양도로 구성되어 있음을 숙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⁷⁰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외무성이 말하는 기타조노 쓰안의 『다케시마도설』은 일서(逸書)이며, 현재 전해지고 있는 서적은 이 일서를 가나모리 겐사쿠(金森建策)가 증보한 『다케시마도설』이다. 가나모리의 책 서문에 따르면, 가나모리와 같은 마쓰에번에 속한 기타조노 쓰안은 ‘이나바국의 아무개(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다케시마도설』로서 호레키([寶曆], 1751~63)기에 저술했다가, 가나모리가 이와미국 하마다[石見國濱田]의 선원 초조[長藏]에게서 들은 말을 증보하여 같은 제목의 『다케시마도설』로 저술했다고 한다. 가나모리가 『다케시마도설』을 저술한 해는 불명이지만, 그는 1849년에 마쓰에번에 네덜란드 학문(蘭學) 담당으로 출사했으니, 그 후 이 책을 저술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나바국의 아무개’나 이와 미국의 초조 등은 다케시마 도해에 직접 관련된 자가 아니다. 따라서 『다케시마도설』은 전설이나 구비(口碑)를 중심으로 편찬되었으므로 역사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기술이 많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69 下條正男, 2005/6, 「続 竹島問題研究の課題」, 『現代コリア』, 21쪽.

70 外務省, 발간연도 불명, 앞의 책, XV - 165쪽.

이 섬[다케시마] 북쪽 3리쯤에 또 하나의 섬이 있으며 상등의 전복이 많다. 이 때 문에 조선에서 3, 5년마다 한 번 어민을 보내 채취시킨다고 한다. 그들은 일찍이 이 다케시마를 몰랐으나 겐로쿠 5년[1692] 봄에 이 섬으로 표류해 처음으로 다케시마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이 설은 겐로쿠 6년 4월 하쿠슈[伯州] 어부들의 소송 상황에서 분명하다.

이처럼 『다케시마도설』은 울릉도 북쪽 3리[12km]에 섬이 있다든지, 조선인은 다케시마(울릉도)를 몰랐단든지 사실에 어긋난 기사를 쓰고 있다. 또한 안용복 납치 사건에 관해서는 “[조선인] 장자(長者) 1명과 동료 2, 3명을 우리 배에 끌어들여”라고 기술했는데, 안용복의 이름도 모르며 납치한 동료가 1명임을 잘 모른다. 이런 기술에 대해 다무라 세이자부로는 “부정확한 기술을 하고 있다”⁷¹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다케시마도설』의 기술은 부정확하므로 자료로서 가치가 낮다. 그런 개인의 저서에 ‘오키국 마쓰시마’라고 쓰여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영유권 문제에서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7. 『장생다케시마기』

일본정부는 일본이 마쓰시마(독도)를 일본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던 자료로서 야다 다카마사의 『장생다케시마기』(1801)를 「일본정부견해3」 및 「일본정부견해4」에서 인용했다. 이 책은 마쓰시마의 크기나 섬까지의 노정 등을 쓴 후, “염천 때 [마쓰시마는] 용수(用水)가 여의치 않다고 한다. 다케시마 도해 때 다케시마마루 [竹島丸]가 왕복할 때는 반드시 이 섬에 정박했다고 한다.……[도중 생략] 본조(本朝) 서해의 끝이다”라고 쓰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이 마쓰시마를 일본 영역으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 책은 사찬서인데다 이 책의 신뢰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를 밝히기 위해 일단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본다.

71 田村清三郎, 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島根県, 12쪽.

『장생다케시마기』는 겐로쿠 기에 무라카와에 고용되어 다케시마(울릉도)로 도해했던 오키국의 이타야 나니베[板谷何兵衛]가 그때부터 40년 후 및 55년 후에 쓰바키 기자에몬[椿義左衛門]에게 전한 이야기를 야다가 쓰바키에게서 듣고 쓴 것이다. 쓰바키는 오키에 사는 어부인데 그가 이타야에게서 다케시마 이야기를 들었던 시기는 쓰바키가 18세와 33세 때로 두 차례다. 그로부터 50년 후 쓰바키가 80세가 넘어서야 이타야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야다에게 전한 것이다. 따라서 기억이 모호한 이야기가 더욱 모호하게 된 채 야다에게 전해진 것이다. 당연히 사실에 어긋나는 기술이 도처에 보인다.

그런 하나의 예를 든다. 이 책은 이타야 등이 1년에 한 번씩 다케시마로 도해해 어업을 한 다음 직접 히젠[肥前]국 나가사키로 가서 수확물을 비단(綾錦)이나 호피(虎皮), 약초 등 청국 상품(唐物)과 교환했다고 썼다. 그러나 다케시마 도해선이 돌아올 때 직접 규슈[九州] 나가사키로 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쓴 까닭은 야다가 지리적으로 히젠국은 다케시마에서 떨어져 있다고 해도 장소에 따라서는 마주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야다는 마쓰시마의 위치가 오키에서 신유(8시 반) 방향으로 170리[680km], 다케시마의 위치가 마쓰시마에서 같은 방향으로 90리[360km] 해상에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케시마가 히젠국과 마주하고 있다고 보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또한 야다는 다케시마의 크기를 10리 혹은 5리, 마쓰시마는 5~3리라고 들었다. 마쓰시마를 굉장히 큰 섬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마쓰시마를 소나무가 아름다운 섬으로 보았다. 이처럼 야다는 마쓰시마에 관해 큰 오해를 한 채 마쓰시마를 “본조 서해의 끝”이라고 썼던 것이다.

이처럼 사실 오인이 많은 『장생다케시마기』는 결코 역사서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역사소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역사소설을 일본정부는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인용한 것이다. 그 후 일본 외무성은 이 문헌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었는지 『장생다케시마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8. 「일본여지로정전도」와 『변요분계도고』

일본정부는 일본이 예로부터 독도를 잘 알고 있었던 자료로서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일본여지로정전도」라는 지도와 곤도 모리시게의 『변요분계도고』(1804)를 「일본정부견해3」 및 「일본정부견해4」 등에서 인용했다. 먼저 『변요분계도고』인데, 저자인 곤도 모리시게는 1799년에 설치된 ‘에조 지방 어용괘(蝦夷地御用掛)’에 속했던 시절에 몇 차례나 에조, 즉 홋카이도[北海道] 및 치시마[千島, 쿠릴] 열도 방면을 탐험한 적이 있었다. 그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주로 북방 경비 등을 논한 『변요분계도고』를 1804년에 저술했다. 이 책은 낙도를 중시한 많은 지도를 게재했는데 그중 북동 아시아를 그린 「금소고정분계지도(今所考定分界之圖)」에 ‘다케시마[タケシマ]’와 ‘마쓰시마[マツシマ]’를 그렸다. 이들은 울릉도와 독도라고 생각되지만 이 지도에서 두 섬에 대한 일본의 확실한 영유 의사를 보기는 어렵다. 이 지도는 단지 일본이 두 섬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을 뿐이다.

다음 「일본여지로정전도」인데, 이 지도를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의 선행 지도로 보는 견해가 있다.⁷² 그러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더구나 이 지도에는 출판자 이름 등이 없으므로 해적판과 다름이 없다.⁷³ 출판물은 “어느 서적(書物)을 막론하고 금후 신판(新板)은 저작자 및 출판자의 실명을 서적 끝(奥書)에 써야 한다”⁷⁴는 명령(觸)이 1722년에 내려졌으며, 이에 위배된 출판물은 해적판이다. 이런 해적판을 영유권 주장에 인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유권의 근거가 되는 확실한 자료가 적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72 아래 전단(leaflet)에 따르면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는 나가쿠보의 「개제부상(일본)분리도(改製扶桑(日本)分里圖)」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長久保赤水 生誕300周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2017, 『近代地理学の祖 長久保赤水』.

73 馬場章, 2001, 『地図と絵図の政治文化史』, 東京大学出版会, 397쪽; 박병섭, 2016, 「池内敏의 『竹島—도 하나의 일·한 관계사』, 『독도연구』 20호, 307쪽(日本語), 262쪽(한국어).

74 명령의 원문은 “一 何書物ニよらす此以後新板之物 作者并板元之實名 奥書ニ爲す致す可申候事”. 馬場章, 2001, 위의 책, 396쪽에서 재인용.

9. ‘덴포 다케시마일건’

이와미국 하마다[濱田]에서 조운(廻船)업을 경영하는 이마즈야 하치에몬[今津屋 八右衛門]⁷⁵의 다케시마(울릉도)로의 밀항이 발각된 ‘덴포 다케시마일건(天保竹島一件)’이 1836년(天保7)에 일어났다. 이 사건을 인용한 「일본정부견해3」은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이후 덴포 기에도 마쓰시마(독도)로의 도해는 문제없었으며 여전히 일본 영토로 생각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유력한 근거의 하나로 삼았다. 「일본정부견해4」도 마찬가지다. 먼저 이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본다.⁷⁶

하치에몬은 에조[홋카이도]로의 항해 때마다 볼 수 있는 자연 자원이 풍부한 다케시마에 주목하고, 섬에서 벌목이나 어업을 하고 하마다번에 특허 세금(冥加銀)을 바치고 싶다고 에도 번저에 청원했다. 그러나 에도 번저가 막부에 문의해보니,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도 결정짓기 어려우므로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회답이었다. 청원이 각하된 하치에몬은 포기할 수 없어서 하마다에 있는 가로(家老) 오카다 다노모(岡田頼母)댁의 문지기 하시모토 산베(橋本三兵衛)에게 열심히 청원했다. 산베는 오카다 다노모와 상의하고 하치에몬의 다케시마 도해를 내락했다. 오카다 등은 궁핍해 있던 하마다번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치에몬은 하시모토 및 오사카(大坂)에 있는 번의 물류 거점(藏屋敷)의 도움을 얻어 오사카 상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도해선을 만들었다. 드디어 하치에몬 등은 1833년에 다케시마로 건너가 벌목 등을 했다. 그러나 3년 후 밀항이

75 「일본정부견해서」 등은 하치에몬의 옥호(屋號)를 아이즈야(會津屋)라고 했지만, 아래 문헌에 따르면, 하치에몬은 공술조서 『다케시마도해일건기』에서 스스로를 이마즈야(今津屋)라고 칭했다. 여러 상황을 생각하면, 이마즈야가 맞다. 森須和男, 2016, 「天保竹島一件顛末」, 『郷土石見』102호, 33쪽.

76 최신의 지견을 가미한 사건의 자세한 경위는, 박병섭, 2018(발간 예정), 「덴포 다케시마일건」과 독도 영유권 문제,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2010-2018) 최종 보고서』,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적발되어 하치에몬 등은 오사카마치봉행소(大坂町奉行所)에 체포되었다. 봉행소에서 조사해보니, 밀항에 하마다 번이 연루되어 있었으므로 이 일건을 막부의 최고 사법기관인 평정소로 넘겼다. 평정소는 일본 각지의 관계자를 조사한 끝에 12월 하치에몬 및 산베에게 사죄(死罪)를 언도하고, 기타 많은 관계자를 엄벌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밀항 당시의 하마다 번주에게는 영구 칩거(永蟄居)를 명했다. 사건의 처리를 끝낸 막부는 1837년에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안에 마쓰시마의 이름은 없었다.

이 사건을 인용한 「일본정부견해4」는 하치에몬에 대한 판결문에서 산베가 가까운 마쓰시마로의 도해 명목으로 다케시마로 건너갈 방법이 있다고 시사했으므로 다케시마로의 도항은 금지되었어도 마쓰시마로의 도항은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마쓰시마는 여전히 일본 영토로 생각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견해는 다무라 세이자부로의 견해를⁷⁷ 바탕으로 한 것이며, 가와카미 겐조가 지지했다.⁷⁸ 한편 이케우치 사토시는 도해금지령에 마쓰시마의 이름은 없지만, 금지령이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쓰시마로의 도해도 금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치에몬 등은 마쓰시마 도해를 명목으로 내세웠으나 이 주장은 단지 발뺌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며, 하치에몬이 처형된 사실은 하시모토의 교사가 통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⁷⁹

실제로 하치에몬을 처음에 문초한 오사카마치봉행소는 그런 발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마쓰시마도 조선 영토로 보았다. 이를 드러내는 자료는 오사카마치봉행소가 작성한⁸⁰ 하치에몬의 공술조서 『다케시마도해일건기』(竹島渡海一件

77 田村清三郎, 1955, 『竹島問題の研究』, 23쪽.

78 川上健三, 1966, 앞의 책, 191쪽.

79 池内敏, 2016, 앞의 책, 106~107쪽.

80 최근까지 『竹島渡海一件記』(東京大学総合図書館所蔵)는 작성자가 모호했지만, 이 자료 안에 “周防守様當表藏屋敷”라는 글이 있는데 ‘藏屋敷’가 있는 ‘當表’는 오사카이므로 이 자료는 오사카마치봉행이 작성한 것이 분명하다. 이 문헌의 번각문은 森須和男, 2002, 『八右衛門とその時代』(浜田市教育委員会)에 있으나 번각하지 못한 문자 및 잘못 읽은 문자가 약 100자 있다. 이들을 수정한 번각문 및 번

記)에 부속된 지도 「다케시마방각도(竹嶋方角圖)」(그림 4)다. 이 지도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그렸다. 이에 관해서는 일본인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 지도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본토와 같은 붉은 색으로 채색하고 두 섬이 조선 영토임을 표시했다.⁸¹

하치에몬 등을 최종적으로 조사한 평정소는 신중히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소속 등을 조사했다. 막부는 쓰시마번에게 두 섬은 모두 울릉도인지, 혹은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마쓰시마는 조선 외 땅인지, 두 섬의 상황, 지리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쓰시마번은 다케시마 근처에 마쓰시마라는 섬이 따로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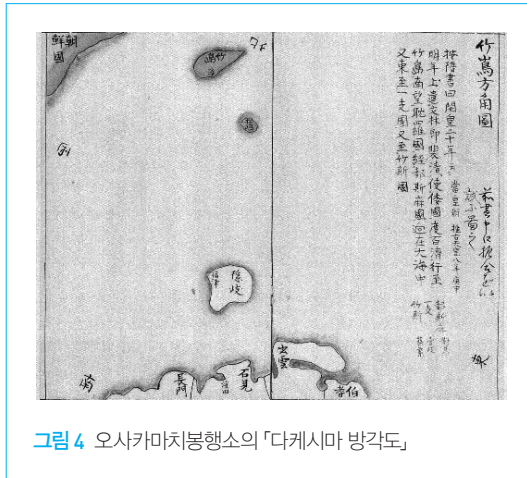


그림 4 오사카마치봉행소의 「다케시마 방각도」

이 섬은 다케시마처럼 일본인이 건너가 어렵을 하는 것이 정지된 섬이라고 생각

역문은, 박병섭, 2018, 앞의 글.

81 박병섭, 2012a, 앞의 글, 143쪽; 朴炳涉, 2012b, 앞의 글, 28쪽; 朴炳涉, 2015b, 「元祿・天保竹島一件と竹島＝獨島の領有權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40号. 일본인 연구자는 2014년에 들어 다음 논문에서 처음으로 지도의 채색을 밝혔다. 竹内猛, 2014, 「竹嶋編入當時の日本人の領土認識」, 『郷土石見』 95号, 53쪽.

竹島方角圖

前書中位據合志
該小島之

嶽

按舊書曰開皇二十年
當年新羅王遣使至
明年上遣文林郎裴濟使倭國度百濟行至
竹島南望耽羅國經新羅國在大海中
又東至一支國又至竹新國

新羅在對面
一支 實地
竹新 蘇業



出雲

善伯

石見

長門

新羅

隱岐

竹島

新羅

鮮朝國

되지만 단정할 수 없다는 것, 조선 지도에 울릉·우산 두 섬이 있다는 것 등을 회답하고 조선 지도도 제출했다.⁸² 이런 회답 등에서 막부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조선의 울릉도와 우산도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로 평정소 관계자가 작성했다고 생각되는 『조선다케시마도항시말기(朝鮮竹嶋渡航始末記)』⁸³의 부속 지도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본토와 같은 붉은 색으로 채색하고 조선 영토로 그렸다. 이 지도의 채색에 관해서도 일본인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본 것이다.⁸⁴

한편, 일본정부의 자료의 인용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 일본정부처럼 판결문에서 ‘가까운 마쓰시마’라고 잘라내면 마쓰시마는 일본에 가까운 인상을 준다. 하지만 원문은 ‘위에 가장 가까운 마쓰시마’이며 ‘위’는 다케시마를 가리킨다. 즉 판결문은 마쓰시마를 다케시마에 제일 가까운 섬으로 보았다.⁸⁵ 상식적으로 다케시마로의 도해가 금지되면 이에 가장 가까운 마쓰시마(독도)도 도해가 금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에 쓴 것처럼 1740년대에 오야 가문은 그렇게 이해했다. 일본정부는 마쓰시마로의 도항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막부가 조선 영토로 본 마쓰시마로의 도항은 금지된 것이며, 일본정부의 주장은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덴포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의 의의에 관해 이케우치 사토시는, “겐로쿠 다케

82 한국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 종가문서」 고문서 목록 #4013; 번각은, 池内敏, 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334~335쪽. 원문 및 번역은, 경상북도 사료연구회, 2017, 『독도 관계 일본고문서 4』, 196~205쪽.

83 하마다시립도서관 소장. 『조선다케시마도항시말기』와 거의 같은 글이 막부의 외교 기록 『통항일람속집(通航一覽續輯)』에 기록됨.

84 주 81)과 같음.

85 『無宿狩込一件』에 기록된 하치에몬에 대한 판결문 원문은, “再應執成之義 三兵衛江相頼砌 右最寄松嶋江渡海之名目を以竹嶋江渡り 稼方見極ル上 弥益筋 二有之ならハ取計方も可有之由而 秋齋并同家來松井圖書も心得居ル趣 三兵衛申聞ル.”이다. 밑줄은 필자가 그었다. 『無宿狩込一件』(일본 국회도서관 소장)의 원문, 번각, 번역문은,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2017, 『독도 관계 일본고문서 4』 127~191쪽.

시마 도해금령, 덴포 다케시마 도해금령, 메이지 10년 태정관(太政官) 지령, 이 세 가지로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우리나라[일본] 중앙 정부 역대가 그때마다 되풀이해서 확인해 왔다”⁸⁶라고 주장했다. ‘덴포 다케시마일건’은 일본이 독도의 영유를 포기한 3대 사건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일본정부견해」가 제시한 12개 자료 중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하나도 없다. 이 때문인지 일본 외무성 팸플릿 『10포인트』는 위의 자료를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다. 「일본정부견해」가 말하는 고유영토론은 파탄한 것이다.

IV. 맺음말

일본 외무성의 『10포인트』는 마쓰시마(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일찍이 일본정부는 고유영토의 근거를 1953~1962년에 한국정부에 보낸 「일본정부견해」에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고유영토의 근거가 된다는 자료 12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오로지 『인슈(온슈)시청합기』에 대해서만 반론했을 뿐이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충분한 분석이 있는 자료는 『인슈시청합기』와 돗토리번의 「회답서」뿐이다. 이 두 자료는 마쓰시마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나머지 10개 자료 중에서 「다케시마도」, 돗토리 번주의 「각」,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고타니 회도」)의 관련 사료, 나가사키봉행소에게 제출된 오야의 「구상서」의 관련 문헌들도 마쓰시마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하치에몬에 대한 판결문의 관련 자료는 오히려 마쓰시마가 조선 영토임을 가리키고 있다.

한편, 오야의 「청서」를 바탕으로 일본정부가 논리를 개발한 ‘마쓰시마 도해면허’ 설인데 외무성은 이를 고유영토론의 기둥으로 세웠으나, 이는 무리한 주장

86 池内敏, 2016, 앞의 책, 183쪽.

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와카미 겐조는 ‘오야가 문서’에서 ‘가메야마 서장’을 발굴했다. 이에 따르면, 오야가 1661년부터 다케시마(울릉도) 안의 마쓰시마로 도해할 일에 관해 ‘로주의 내의’를 얻었다고 한다. 이 ‘로주의 내의’는 이케우치 사토시 등이 반론했듯이 마쓰시마 도해면허와 무관하다. 한편 ‘가메야마 서장’은 다케시마 도해 관계자가 마쓰시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즉 도해 당사자인 오야·무라카와 양가나 아베 시로고로 등 막부 관계자들은 마쓰시마를 “다케시마 안의 마쓰시마” 즉 다케시마의 부속 섬처럼 인식하고 있었으며, 로주도 그렇게 들었다고 한다. 그런 부속 섬 같은 마쓰시마에 도해하는 것은 따로 면허나 허가는 필요 없었던 것이다. 또한 다케시마로의 도해가 1696년에 금지되었는데 이는 바로 다케시마 안에 있는 마쓰시마로의 도해도 금지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일본정부는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후에도 마쓰시마로의 도해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돗토리번이 막부에게 마쓰시마는 돗토리번에 부속된 것도 아니고, 일본 어느 지방에도 부속되지 않는다고 듣고 있다고 보고했던 섬이다. 그런 섬으로의 도해가 허용될 리가 없다. 또한 에도 막부는 한 번도 마쓰시마를 일본 영토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대체로 막부는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울릉도 쟁계)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마쓰시마를 알았다. 그런 마쓰시마에 막부가 영유 의사를 가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도해 당사자였던 오야·무라카와는 마쓰시마는 다케시마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1650년대에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후도 이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으며,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다케시마·마쓰시마 도해금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오야는 1741년에 나가사키봉행 및 막부의 중추 기관인 지사봉행 등에게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 금제라고 설명했으며, 각 봉행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 들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마쓰시마로의 도해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근거로 ‘덴포 다케시마일건’ 당시 평정소가 하치에몬에게 1836년에 내린 판결문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 관련 자료는 오히려 마쓰시마가 조선 영토임을 보여주고 있

다. 판결문은 마쓰시마를 다케시마에 가장 가까운 섬으로 보았으므로 다케시마 도해가 금지되었다면 이에 가장 가까운 마쓰시마로의 도해가 허용되었을 리가 없다. 실제로 하치에몬 등을 처음에 문초한 오사카마치봉행소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판단하고 이를 드러내는 지도 「다케시마방각도」를 그렸다. 막부 중앙도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소속을 신중히 조사한 결과 이들은 조선의 울릉·우산이라고 인식했을 것이며,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처리한 평정소 관계자는 「다케시마방각도」처럼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그린 지도를 작성하고 사건 기록 『조선다케시마도항시말기』에 첨부했다.

이상과 같이 에도 막부가 마쓰시마(독도)에 대해 영유 의사를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는 하나도 없다. 따라서 마쓰시마가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하나도 없다. 이 때문인지 외무성의 『10포인트』는 이들 12개 자료를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정부견해」의 고유영토론이 파탄했음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메이지시대에는 잘 알려져 있듯이 1877년 태정관이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일본과 상관이 없다고 지령했던 기록을 비롯해 마쓰시마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는 있으나, 마쓰시마가 일본 영토임을 보여주는 공적인 자료는 1905년 이전에는 없다. 결국 일본정부는 1905년 이전 독도에 대해 한 번도 영유 의사를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외무성의 주장은 결코 성립될 수 없다.

참고문헌

〈한국어〉

-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2017, 『독도 관계 일본고문서 4』.
- 곽진오, 2014, 「일본의 독도고유영토, 무주지선점, 그리고 국제법적주장의 허구와 한계」, 『일본문화학보』 62호.
- 권정, 2014, 「18세기말 오키도(隠岐島)의 죽도전승」, 『일본어문학』 65집.
- 김호동, 2011,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 비판」, 『민족문화논총』 49호.
- 다케우치 다케시 저, 송휘영·김수희 역, 2013, 『獨島=竹島 문제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 I, 선인.
- 박병섭, 2012a, 「안용복사건 이후의 독도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 13호.
- _____, 2013, 「17세기 일본인의 독도 어업과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 15호.
- _____, 2015a, 「대일강화조약과 독도·제주도·쿠릴·류큐제도」,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VII』, 선인.
- _____, 2016, 「池内敏의 『竹島—또 하나의 일·한 관계사』」, 『독도연구』 20호.
- _____, 2018(발간 예정), 「텐포 다케시마일건과 독도 영유권 문제」, 『독도사료연구회 활동(2010-2018)에 관한 최종 보고서』,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 서인원, 「1950년대 일본 고유영토설의 정치적 분쟁화 모순점에 대한 고찰」, 『영토해양연구』 15호.
- 송휘영, 2014, 「『죽도문제 100문 100답』의 「죽도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 비판: 일본의 ‘고유영토론’은 성립하는가?」, 『독도연구』 16호.
- 외무부, 1977, 『왕복외교문서(1952-1976)』.
- 일본 외무성, 2014,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개의 포인트』.

〈일본어〉

- 堀和生, 1987, 「一九〇五年 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4号.
- 内藤正中, 2004, 「竹島(独島)問題の問題点」, 『北東アジア文化研究』 20号.
- 内藤正中·金柄烈, 2007, 『史的檢証 竹島·独島』, 岩波書店.

- 大西俊輝, 2007, 『続 日本海と竹島』, 東洋出版.
- _____, 2011, 『第三部 日本海と竹島』, 東洋出版.
- 島根県/島根県教育委員会/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2017, 『竹島～日本の領土であることを学ぶ～』, 島根県.
-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2014, 『竹島問題100問100答』, ワック.
- 馬場章, 2001, 『地図と絵図の政治文化史』, 東京大学出版会.
- 木村幹, 2014, 「池内敏著『竹島問題とは何か』」, 『東洋史研究』, 72권 4호.
- 朴炳涉, 2012b, 「江戸時代の竹島＝独島での漁業と領有権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5号.
- _____, 2014,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千島・竹島＝独島問題(2)」,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9号.
- _____, 2015b, 「元禄・天保竹島一件と竹島＝独島の領有権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40号.
- 三田清人, 2007, 「鳥取県立博物館所蔵 竹島(鬱陵島)・松島(竹島/独島)関係資料」,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 島根県.
- 森田芳夫, 1961, 「竹島領有をめぐる日韓両国の歴史上の見解」, 『外務省調査月報』 第2巻 5号.
- 森須和男, 2002, 『八右衛門とその時代』, 浜田市教育委員会.
- _____, 2016, 「天保竹島一件顛末」, 『郷土石見』 102호.
- 山辺健太郎, 1965, 「竹島問題の歴史的考察」, 『코리아評論』 7卷2号.
- 山陰中央新報社, 2006, 『発信 竹島～下條正男・拓殖大学教授に聞く』, 山陰中央新報社.
- 外務省, 2014, 『尖閣諸島』.
- _____, 2015, 『われらの北方領土』.
- _____,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 XV竹島問題(公開文書番号 910, 발간 연도는 불명).
- 羽場久美子, 2013/2, 「尖閣・竹島をめぐる「固有の領土」論の危うさ」, 『世界』.
- 油井宏子, 2009, 『江戸時代&古文書虎の巻』, 柏書房.
- 伊東巳代治, 『帝國版圖』, 国会図書館所蔵「伊東巳代治関係文書」 42(발행 연도는 불명).

- 長久保赤水生誕300周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2017, 『近代地理学の祖 長久保赤水』, 田川孝三, 1988(原稿は 1965年以前), 「竹島領有に関する歴史的考察」, 『東洋文庫書報』20.
- 田村清三郎, 1955, 『竹島問題の研究』, 島根県.
 _____, 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島根県.
- 竹内猛, 2010, 『竹島＝独島問題「固有の領土」論の歴史的検討』前編, 私家版.
 _____, 2014, 「竹嶋編入当時の日本人の領土認識」, 『郷土石見』95号.
- 池内敏, 2005, 『『隠州視聽合紀』の解釈をめぐって』, 『青丘学術論集』25集.
 _____, 2011, 「竹島／独島論争とは何か」, 『歴史評論』732号.
 _____, 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_____, 2015, 「『国境』未満」, 『日本史研究』630号.
 _____, 2016, 『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中公新書.
 _____, 2017, 『日本人の朝鮮観はいかにして形成されたか』, 講談社.
-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_____, 1953, 『竹島の領有』, 外務省.
- 塚本孝, 1985, 「竹島関係旧鳥取藩文書および絵圖(上)」, 『レファレンス』411号.
 _____, 1994, 「竹島領有権問題の経緯」, 『調査と情報』244号.
 _____, 2013, 「元禄竹島一件をめぐって—付、明治十年太政官指令」, 『島嶼研究ジャーナル』2巻2号.
 _____, 2014, 「竹島領土編入(1905年)の意義について」, 『島嶼研究ジャーナル』3巻2号.
- 下條正男, 2005/6, 「続 竹島問題研究の課題」, 『現代コリア』.
 _____, 2007, 「最終報告にあたって」,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_____, 2011, 「実事求是 第20回「東北アジア歴史財団」の愚挙について」,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2009年度,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 和田春樹, 2012, 『領土問題をどう解決するか』, 平凡社新書.

〈사료〉

『竹島渡海一件記』, 『竹嶋渡海由來記拔書控』, 『竹嶋之書附』, 『大谷氏舊記』三, 『朝

『鮮竹嶋渡航始末記』, 『磯竹島覺書』, 『隱州視聽合記』, 『隱岐國古記』, 宗家文書,
『村川家文書』(写), 『通航一覽續輯』

일본정부의 독도 고유영토론에 관한 역사학적 검증

박병섭

일본정부는 1956년부터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하는 근거는 외무성의 팸플릿 『10포인트』에는 없으며, 1953-1965년에 있었던 한·일 정부간 독도 영유권 논쟁에서 제시되었다. 이때 「일본정부견해」는 역사적인 자료 12개를 제시하면서 일본은 17세기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들에 대해 충분한 선행 연구가 있는 자료는 『인슈시청합기』와 돛토리 번이 막부로 제출한 「회답서」 등 2개뿐이다. 이들 자료는 마쓰시마(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본고가 나머지 자료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 번주의 「각」, 「다케시마도」,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의 관련 사료, 나가사키 봉행에게 제출된 오야의 「구상서」 관련 자료는 마쓰시마(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정부가 인용한 「덴포(天保) 다케시마일건」에서의 하치에몬(八右衛門)에 대한 판결문도 관련문서는 오히려 마쓰시마가 조선 영토임을 가리키고 있다. 이때도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이 발령되었는데 이는 「젠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마쓰시마로의 도해

는 금지된 것이다.

이처럼 마쓰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드러내는 자료는 하나도 없다. 이 때문인지 일본 외무성의 팸플릿 『10포인트』는 위의 자료들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정부가 예전에 고유영토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 12개는 거의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결국 「일본정부견해」의 고유영토론은 성립될 수 없으며, 파탄한 것이다.

주제어: 한국정부견해, 일본정부견해, 독도, 다케시마, 마쓰시마, 울릉도

ABSTRACT

Inspection for the ‘Japanese inherent territory theory’ to Dokdo

Park Byoungsup

Since 1956,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gun to insist that the Dokdo is an inherent territory of Japan. The reason why Japan calls Dokdo as its own territory was not shown in the pamphlet, *10 points to understand the Takeshima Dispute*,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ut was shown in the debate over the sovereignty of Dokdo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1953-1965. At this time, the ‘Japanese Government’s View’ proposed 12 historical documents and claimed that Japan had established sovereignty over Dokdo in the 17th century.

There are only two documents with sufficient precedent research for those documents, namely “*Description of seeing and hearing about Inshu*” (『隱州視聽合記』) and “The answer book which Tottori feudal clan submitted to the Shogunate.” These show Matsushima(Dokdo) is not Japanese territory. Also, As a result of analyzing remains of documents, it was found that following documents revealed that

Matsushima(Dokdo) was not Japanese territory, namely “Tottori feudal lord’s memorandum”, “Map of Takeshima”, The related materials such as “Map of Matsushima and Takeshima” and “Note verbale” sent by the Oyas to the Nagasaki magistrate. Not only that, but the relevant documents of the judgment on Hachiemon at the Tenpo(天保) Takeshima Affair which cited by Japanese government show that Matsushima is Chosun territory.

For these reasons, the pamphlet by MOFA did not cite any of the above materials. This is a self-evident statemen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d previously provided 12 documents on the basis of its inherent territory as little evidence. In the end, the inherent territory theory of the ‘Japanese government’s view’ can not be established.

KEYWORDS: Korean government’s view, Japanese government’s view, Dokdo, Takeshima, Matsushima, Ulleungdo